##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 경위

- 발의일자: 2023. 6. 1.
- O 발 의 자: 이금태 의원 외 4명
- O 회부일자: 2023. 6. 7.(의안번호 제450호)
- 검토기간: 2023. 6. 7. ~ 6. 13.

#### 2. 주요 내용

- O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공영장례 지원 대상, 방법,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공영장례 관련 업무 대행, 점검, 환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
- 나. 입법예고: 2023. 6. 8. ~ 6. 13.(접수된 의견 없음)
- 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 의견

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○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·화장 및 봉안 책무1)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·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 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구시 조례<sup>2)</sup>와의 연계성을 세부 사항까지 고려 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.

#### 나.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

-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대체로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, 본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구체적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현재 책정된 예산3의 범위 안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일정 기간마다 합리적인 장례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6조제4항)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7조에 따르면 지원 신청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였는데, 신청서 서식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접수 창구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해당 사항에 관한 내부 지침을 정한 후 시행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영장례 주관자 및 대행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장례 지원 금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였는데 그 경비의 성격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.

#### 다. 종합 의견

O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정착

<sup>1) 「</sup>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 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\*"시장등"에는 특별 자치시장、특별자치도지사、시장、군수、구청장이 포함됨.

<sup>2) 「</sup>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」(2022. 2. 28. 제정) ※대구시 8개 구·군 중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서구와 중구, 남구 세 곳임.

<sup>3) 「</sup>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장제급여와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제처리비(전액 구비)는 각각 1인당 80만원(장 제처리비는 연간 10명 이내)이며, 복지정책과의 공영장례서비스지원 사업에 책정된 공영장례식비(시비 50%, 구비 50%) 역시 1인당 80만원(연간 35명 이내)이어서 안 제6조제2항의 200% 범위를 이미 충족하고 있음.

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사회부조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 제정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두루 반영되어 있으나, 소관 부서에서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점 또는 미비점이 없는지주의깊게 살펴서 공영장례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